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
[류명기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06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1. 4. 5.

발 의 자 : 류명기 의원

찬 성 자 : 김용술 의원

1. 제안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금천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(안 제3조)
- 다. 지원내용(안 제4조)
- 라. 사무의 위탁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4. 5. ~ 4. 1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1. 노인의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사업
2. 노인의 건강증진,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사업
3. 노인의 사회·교육·문화·여가활동 등 장려에 관한 사업
4.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, 고령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24조제1항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
2. 법 제6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·노인의 날·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·홀몸 노인·기타 저소득 노인 등
4.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및 시설 등

제4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의 시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·난방비
 2.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
 3.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
 4.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·노인의 날·경로의 달·설날·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경비 등
-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3조제3호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또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3조제4호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와 위탁방법·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- ④ 구청장은 업무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노인복지법

[시행 2020. 7. 8.] [법률 제17199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 3. 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